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87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김예지·김상욱·정성국

고동진 • 박정하 • 박덕흠

김소희 · 김대식 · 서천호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발달장애인의 이런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①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한다)와 계약을 통해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재산을 이전받아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 할 수 있다.
 -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계약기재사항, 재산 관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4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① 국
	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
	상생활 유지를 위해 발달장애
	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
	장애인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통해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
	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
	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
	용절차, 계약기재사항, 재산 관
	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41조(위임·위탁) ① ~ ⑥ (생	제41조(위임·위탁) ① ~ ⑥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u>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u>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29
	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
	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